배포 2023. 9. 1.(금)

보도시점

(인터넷) 배포 즉시

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발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금)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해당 법안들은 9월 4일(월)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붙임】1.「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2차 회의 결과 브리핑문

- 2.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3. 8. 23.) 의결사항
- 3.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3, 8, 31.) 의결사항

담당 부서	책임교육지원관	책임자	과 장	최보영 (044-203-6480)
	교원정책과		사무관	백봉현 (044-203-6481)
		담당자 당자	교육연구관	김명련 (044-203-6487)
		금당자	교육연구사	조수원 (044-203-6488)
			교육연구사	허혜정 (044-203-6484)





붙임 1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 결과 브리핑문

지난 8월 17일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1차 회의를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과 입법 추진을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국회와 정부는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논의하였고, 주요 결과를 발표 드립니다.

- 첫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 2.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조치 한다.
- 3.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소위 '악성 민원'을 포함하고, 형법 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죄 및 다른법률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추가한다.
- 4.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한다.
- 5.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전학조치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에 시행하도록 한다.
- 6.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7.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둘째,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및 「유아교육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2.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며, 교원의 학생 지도에 적극 협력한다.
 - 3.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진다.
 - 4. 학교는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5.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원장·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다.
- 셋째,「교육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 보호자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 넷째,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4자협의체에서 합의하고 바로 법안 소위에 상정하기로 한다.

4자 협의체는 향후에도 교권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법사위원회에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붙임 2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3. 8. 23.) 의결사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제	주요내용	조항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도록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제16조제 1항

□ 초 · 중등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조항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o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3 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제20조의 2제2항 신 설

□ 유아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조항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제21조의3 제1항 신 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제17조제 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제21조의3 제2항 신 설

붙임 3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3. 8. 31.) 의결사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제	주요내용	조항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제14조
계획 수립 등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제14조의2 신설
실태조사 실시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 치 등 조사 	제14조의3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 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	제14조의4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 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제15조 제23조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규 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제16조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도록 함	제16조의2 제2항 신설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제18조제3 항

주제	주요내용	조항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 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제19조의2 신설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제20조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교보위 회의 비공개 원칙,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제21조 신설
비밀누설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금 부과	제25조제2항 신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주제	주요내용	조항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제18조의5 신설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ㅇ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제20조제1 항
교원의 개인정 보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제20조의3 신설

□ 교육기본법

주제	주요내용	조항
보호자의 의무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제13조제3항 신설